

살생물제품명 설정을 위한 안내문

유해성관리과 (2026.05.28.)

【 관련 규정 】

- ◎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(제21310호, 2025. 12. 31.)
 -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(살생물제품의 표시 등)
 -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(표시·광고의 제한)
- ◎ 「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」 (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-39호, 2026. 2. 6.)
 - 제1조(목적)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살생물제품을 구매·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.
 - 제4조(표시사항 및 표시방법)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별표1과 같다.
- ◎ 「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규정」 (환경부고시 제2025-165호, 2025. 10. 1.)
 - 제2조(표시·광고의 제한 내용)

□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에 관한 설정 원칙

- 제품의 겉면에 제품명을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수문자는 제외한다.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함께 표시하는 경우 한글 활자의 크기를 더 크게 표시하여야 한다(시행규칙, 제26조).
*전문사용자를 위한 살생물제품은 함량 단위를 영문(예, mol, M)으로 표기 가능
- 제품명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상에 기재된 살생물제품명을 표시하되, 제품명이 여러 개일 경우 대표할 수 있는 제품명 1개를 승인통지서 1면에 작성하고 나머지 제품명은 별첨으로 기재한다.
-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명은 다른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.
- 제품의 표시면에는 제품명, 살생물제품유형, 살생물물질(명칭과 배합비율(중량(%)), 유통기한, 효과·효능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에 대한 문구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품의 표시 및 광고에 포함해야 한다(시행규칙, 제34조).

□ 동일 살생물제품명 처리 원칙

- 서로 다른 승인신청자가 동일한 살생물제품명 또는 추가 살생물제품명을 신청하였을 때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승인한다.
 - ① 살생물제품명과 추가 살생물제품명이 동일한 경우 살생물제품명 우선
 - ② 승인 신청 자료 제출일(제품군의 경우 개별제품 제출일)이 빠른 경우 우선
 - ③ 승인 신청 자료 제출일이 동일한 경우 평가개시 일이 빠른 경우 우선
 - ④ 완결성 평가 중 또는 평가개시 후 반려·자진취하하는 경우 제출일 및 평가개시일에 따른 우선순위 박탈
- 살생물제품명 또는 추가 살생물제품명에 대한 상표권이 확인되는 경우 상기 순위와 무관하게 우선 처리

□ 살생물제품 및 추가 살생물제품명 제출·변경 원칙

- 승인신청자는 살생물제품 승인을 위하여 완결성 있는 승인 신청자료를 제출할 때 살생물제품명 및 추가 살생물제품명을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① 살생물제품명은 승인통지서에 표기되는 제품명 1개로 제한한다.
 - ② 추가 살생물제품명은 승인통지서 별첨에 표기되는 제품명으로 최대 10개로 제한하나,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살생물제품명 사용처에 대한 자료 제출 시 신청 가능하다.
 - ③ 추가 제품명은 「살생물제품의 표시 등에 관한 설정 원칙」을 따른다.
- 제품명에 대한 변경 및 수정은 아래의 원칙을 따른다.
 - ①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 후 살생물제품명은 변경이 불가하며 승인 통지 이후 변경 승인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② 추가 살생물제품의 제품명은 변경 가능하나 변경 가능 시기는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 후 평가 개시 이전 단계까지로 제한한다. 평가 개시 후 변경은 불가하며 승인 통지 이후 변경 승인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.

※ 다만, 안내일(26.5.28.) 기준 평가 개시된 제품의 경우 평가서 열람에 대한 신청자 의견으로 추가 살생물제품의 변경 및 수정은 가능하며, 요청사항에 대한 소명자료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.

□ 제품명 설정 제한 사례

- 기존 판매제품과 동일한 제품명, 특정 상호명, 유명인, 전문가 등의 이름을 포함하여 제품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 및 다른 제품으로 오인하는 경우

(사례) 'OOO 살균제' 'OOO 살충제'

특정 유명인, 전문가 등의 특정 이름 및 관련없는 상호명을 제품명에 포함시키는 경우는 사용을 제한

- 최고·최상급 표현을 과도하게 기재하는 경우

(사례) '베스트', '넘버원', '퍼스트', '최고의', '완전' 등

타제품보다 탁월한 성능을 갖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제품명은 과장된 표현이므로 사용 제한

- 표시·광고의 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

(사례) '그린OOOO', '에코OOOO', '자연살충OO', '안심OOO', 웰빙 등

- 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(독성없음, 무독성, 무해성)
- 환경·자연친화적, 천연, 그린, 에코, 자연주의, 순, 순수 등의 문구를 제품명에 포함시키는 경우
- 인체·동물친화적, 안심, 착한, 무해, 안전 등의 문구를 제품에 포함시키는 경우
- 웰빙, 사람을 생각, 건강까지 생각, 피부를 생각, 다목적 등의 문구를 제품에 포함시키는 경우 사용을 제한

* 화학제품관리시스템(CHEMP)의 공지사항('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·광도에 관한 규정' 시행 안내문) 참고